

【 6 】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0. 2. 29.

제 출 자 : 양주군수

□ 개정이유

-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99. 12. 7 대통령령 제16610호)됨에 따라 등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 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 하도록 함 (안 제23조 제2항)
- 나.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허가 할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 할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 다. 남계(男系)와 여계친족간(女系親族間)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함 (안 별표 3)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총리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중 “태생리기간 마다 1일”을 “태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제23조제7항(종전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항(종전 제8항)중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를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로 한다.

⑦군수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제2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중 “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7
	○ 자녀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 배우자	1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㉓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간마다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p>	<p>㉓ -----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권진을 위하여 매월 1일 -----.</p>
<p>㉔(생략) ㉕(생략)</p>	<p>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㉕ (현행 제4항과 같음) ㉖ (현행 제5항과 같음)</p>
<p>㉗ 군수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0일간의 장기제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제직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허가하여야 한다.</p>	<p>㉗ 군수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제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제직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p>
<p>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장기훈련중일 때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2에 의한 휴직중일 때 3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한 휴직중일 때 4 기타 본인 또는 기관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p>	<p>㉘(현행 제7항과 같음)</p>
<p>㉚(생략)</p>	<p>㉙ ----- -----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 ----- -----</p>
<p>㉛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㉚(현행 제9항과 같음)</p>
<p>㉜(생략)</p>	

신·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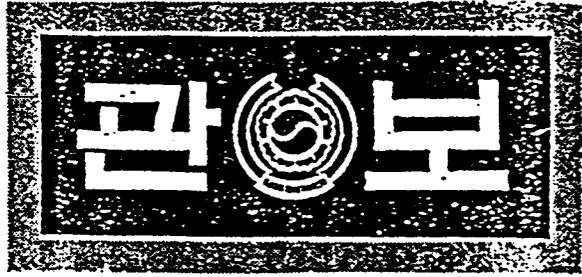
현행	개정안
<p>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u>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 -----<u>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경조사별휴가일수표			(별표3) 경조사별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7	결혼	○ 본인	7
	○ 자녀	1		○ 자녀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 배우자(처)	1	출산	○ 배우자	1
사망	○ 배우자	7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 · 조부모 · 외중조부모 · 외조부모	5
	○ 자녀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 배우자	2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 · 조부모 · 외중조부모 · 외조부모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 고 : 가.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나. 민법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부모 · 조부모 · 중조부모 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중조부모도 포함되며,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친생 부모도 포함한다.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

본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375호 1999. 12. 7. (화)

선 람	기 관 의 장
	<i>김재진</i>

[대 통 령 령]

- 대통령령제16,608호(공적저우리법시행령중개정령)3
- 대통령령제16,609호(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시행령)9
 - 대통령령제16,609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대통령령
 - 사무관리규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예관한법률시행령
 - 보안업무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6,610호(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32
- 대통령령제16,611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34
- 대통령령제16,612호(어업협정체결예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35
 - 대통령령제16,612호부칙에의하여개정되는대통령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예관한법률시행령

[부 령]

- 농림부령제1,349호(농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44
- 건설교통부령제218호(건설교통부장관및그소속장관의주관예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예관한규칙개정령)63
- 건설교통부령제219호(공동주택관리규칙중개정령)68
- 법률제5,908호(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중개정74

[공 문 시 행]

- 공무원후가업무예규동보(행정자치부)75

[고 시]

- 산업자원부고시제1999-143호(전기설비기술기준중개정)87
- 건설교통부고시제1999-369호(도로구역결정)107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999-263호(하천정비시행계획추가및경정고시)107
- 기술조준원고시제1999-415호 · 제1999-416호(한국산업규격개정)109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1999-105호(경사도복사방등부표소등)110
(이면 계속)

회 람	<i>김재진</i>								
--------	------------	--	--	--	--	--	--	--	--

발행 행정자치부 (편집 ☎720-4331 보급 ☎727-0611) 1201-4A 1995.10.12 승인
 서울 중로구 세종로 77-6 ☎110-760 190×268 선공용지 48.5g/㎡

마.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정부기록보존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대통령 임기종료 40일전까지 대통령당선자가 지명하는 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관련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수집·보존되도록 함(영 제28조).

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등으로 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인원중 4분의 1 이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되, 2010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영 제40조 및 부칙 제4조).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대 중

1999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 종 필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김 기 재

◎대통령령 제16,610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헌업공무원"을 "헌업공무원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헌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헌업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19조제6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매생리기마다 1일"을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점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제20조제7항(중전의 제6항) 전단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행정기관의 장"으로,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제8항(중전의 제7항)중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을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 단서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3조제1항·제2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단서중 "총무처장관이 외부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외교 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관련)

구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외 간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

구분	대 상	일 수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발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칙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항목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책임운영기관(責任運營機關)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며, 경조사(喪葬事)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제정 또는 변경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조항을 삭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375호

관 보

1999. 12. 7. (목요일)

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영 제8조의2제3항).

나. 현업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도록 함(영 제12조)

다.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할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영 제20조제2항).

라.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점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마. 남계(男系)와 여계친족간(女系親族間)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 것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함(영 별표 2).

<법제처 지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1999년 12월 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인환
부총리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인환
부총리 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인환
부총리 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인환
부총리 겸 보건복지부 장관 이인환
부총리 겸 환경부 장관 이인환

◎ 대통령령 제16,611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차관

9의3.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도시사(제4항제3호의 사항 중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 이하인 경우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인 미만(제2호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20세대 미만의 노후·유망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1971. 1. 15]
[조례 제224호]

- 개정 1972. 8.18 조례 제 321 호
- ” 1977. 2.12 조례 제 505 호
- 전문개정 1977. 5. 2 조례 제 547 호
- 개정 1978. 3.18 조례 제 583 호
- ” 1979.10.18 조례 제 644 호
- ” 1981. 6.23 조례 제 747 호
- ” 1982. 4.17 조례 제 811 호
- ” 1983. 5. 6 조례 제 903 호
- ” 1985.10.25 조례 제1074호
- ” 1988. 1.26 조례 제1174호
- ” 1988.10.10 조례 제1223호
- ” 1989. 4.18 조례 제1261호
- ” 1989. 7.12 조례 제1285호
- ” 1993. 4. 9 조례 제1448호
- ” 1994. 6. 8 조례 제1491호
- ” 1996. 2.12 조례 제1559호
- ” 1997. 2.24 조례 제1606호
- ” 1998. 3.16 조례 제1663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 3 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 4 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후 2)

제5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및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및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및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당직및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이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추 2)

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주군수는 공판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94. 6. 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2장 근무시간등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추 2)

제5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 2(토요일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쉼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6년 이상	23일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추 2)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4. 6. 8)

③연가는 13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안에서 연가·외출·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 경우 공무원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토요일전일근무제와 연가) ①토요일전일근무제 적용 공무원의 근무 토요일의 모든 휴가는 1일로 처리하고, 휴무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일연가는 반일로 처리한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의 토요일 연가는 반일연가로 처리한다. 다만, 연가이외의 병가·공가·특별휴가는 1일로 처리한다.

③30일이상 계속되는 휴가(장기병가·출산휴가등)는 토요일전일근무제의 근무·휴무에 관계없이 휴가기간중의 모든 토요일은 휴가 1일로 처리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휴가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며,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추 2)

제5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퇴직후 당해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는 퇴직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때(신설 '94. 6. 8)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추 2)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간 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상을 받을 때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을 때
3. 청백리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⑥군수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허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장기훈련중일 때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2에 의한 파견근무중일 때
3.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한 휴직중일 때
4. 기타 본인 또는 기관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⑦월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3. 4. 9)

⑨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 2)

제5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길근으로 본다.

제25조의 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94. 6. 8)

제 4 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 5 장 정치운동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어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추 2)

제5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1. 1.15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8.18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2.12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5. 2 조례 제5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 5. 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양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조례 제505호 1977. 2. 12)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 칙 (1978. 3.18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10.18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23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17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5. 6 조례 제 903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0.25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추 2)

제5편 총무 · 제4장 서무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부 칙 (1988. 1.26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10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18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12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9 조례 제1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 6. 8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12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24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16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 2)

(별표1)

선 서 문

선 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합니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추 2)

(별표2)

공 직 자 의 행 동 른

〈대 민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대 내 관 계〉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추 2)

(별표3)

경조사별휴가일수표

(개정 '94. 7. 5)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본인	7
	○ 자녀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	5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 배우자(처)	1
사 망	○ 배우자	7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 자녀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3
탈 상	○ 배우자	2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비 고 : 가.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나. 민법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부모·조부모·증모부모 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모부모도 포함하며,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친생부모도 포함한다.

(추 2)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 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99. 12. 7. 대통령령 제16610호)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 나.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 라. 남계(男系)와 여계친족간(女系親族間)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함 (안 별표 3)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99. 12. 7. 대통령령 제16610호)

관계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전문)